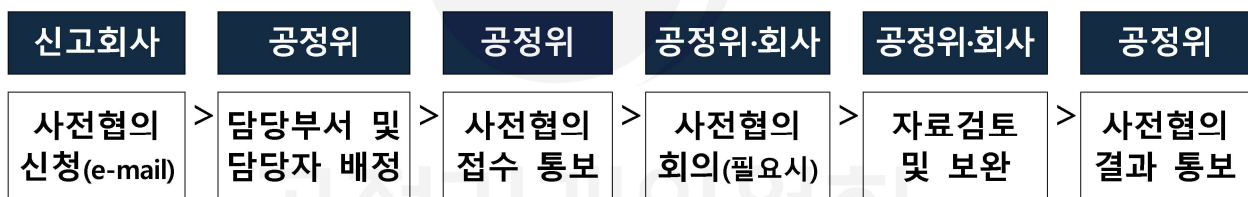


##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 운영방안

- (대상) 간이신고 · 일반신고 구분없이 신청 가능
- (시기) 시기 관계없이 신청(다만, 정식 신고일로부터 2주 전까지는 신청 필요)
- (기간) 기간 제한 없이 협의 가능하며, 언제든지 정식 신고 전환 가능
- (절차) 공용메일(merger@korea.kr)로 사전협의 신청 및 자료 송부
  - 대면회의 필요 시, 사전협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회의 개최
  - 회사측도 대면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, 필요시 화상회의 등 적극 활용



- (내용) 경쟁제한성 판단과 관련성이 적거나(재무정보 등),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(시장현황 등) 자료들은 제외 또는 추후 제출 가능
- (통보) 협의 진행단계(개시 · 종료) 및 협의결과를 메일로 통보\*
  - \* 결론 도출 전 정식 신고 시, 협의결과를 구두 통보하거나 별도 통보 없이 종결 가능
- (효과) 정식 신고 심사기간 단축 및 불필요한 자료보완 방지
  - 사실관계 ·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한, 담당자가 변경 되더라도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되도록 운영하여 일관성 유지